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redacted]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8884 취득세경정결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시 B 답 820㎡, C 전 783㎡, D 답 106㎡, E 전 1,097㎡, F 전 12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 G 답 1,391㎡, H 답 31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2013. 11. 13.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301,110,000원,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한 경우의 40/1000로 하여 취득세 12,044,400원, 농어촌 특별세 602,220원, 지방교육세 1,204,440원 합계 13,851,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농지이므로 지방세법상 농지에 적용되는 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7.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공부상 지목이 전, 답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redacted]시 D 토지 및 H 토지는 농지개량시설로서 농지를 구성하는 도로이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는 11월로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 전소유자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농사를 짓지 못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던 것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어떠한 공작물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농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취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에다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이어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신호내추럴푸드(주)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은 임야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풀이 높이 자라 있었으며, 바위들이 널려 있는 등 방치된 상태여서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④ 이후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이의를 받고 다시 2013.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redacted]시 D 토지, F 토지, H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B 토지, C 토지, E 토지, G 토지에서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2013. 8. 19.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방치된 상태였던 점, ⑤ 2008년 및 2009년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밭으로 가꾸어 온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8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 이외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김윤희

판사 김윤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7-30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끝.